

하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하천구역(중랑천)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행정대집행」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자 하나, 신원미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4일

노 원 구 청장



1. 처분내용: 하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계고(2차)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근거: 하천법 제33조(하천점용의 허가 등)
하천법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
행정대집행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
3. 공고기간: 2026. 9. 4. ~ 2026. 9. 21.(17일간)
4. 공고방법: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공고대상

소재지	행위자	주소	위반사항	비고
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-10 일대	미상	미상	무단경작	하천구역 (중랑천)

6. 공시송달내용

-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오니, 2026. 9. 21.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노원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문의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(☎02-2116-4008)